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정 1999. 11. 23. 조례 제1660호
개정 2008. 7. 7. 조례 제2105호(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0. 12. 31. 조례 제2287호(체명개정)
일부개정 2019. 3. 5. 조례 제3024호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12. 29. 조례 제35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안양시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5.>

제2조(명칭) 안양시 시정소식지(이하 “시정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우리안양”이라 한다. 다만, 명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칭과 어울리는 부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3. 5.]

제3조(발행) 시정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전문개정 2010. 12. 31.]

제4조(보급대상) 시정소식지의 보급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제5조(게재내용) 시정소식지의 게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1. 국·도정 및 시 주요시책
2. 의회소식
3. 공지사항
4. 생활정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 시정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안양시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

1. 관계공무원

2.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진작가 또는 사진, 디자인 등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홍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12. 29.>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 3. 5., 2023. 12. 29.>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3. 5., 2023. 12. 29.>

⑦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8. 7. 7., 2023. 12. 29.>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하는 경우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9.]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1. 시정소식지의 기획 및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광고게재내용 및 게재여부심의
4. 그 밖에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3. 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1조(명예기자) ① 시정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10명 이내로 하며, 문예창작에 재질이 있거나 신문·잡지사의 기자, 원고기고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④ 명예기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수집 및 기사작성 등 취재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명예기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2조(광고) 시정소식지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3조(보상)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2020. 7. 10.>

② 시정소식지에 원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를 기고하여 채택된 자와 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③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 이벤트 등

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2023. 12. 29.>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3. 5.>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29.]

부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7.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2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5. 조례 제3024호>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8 까지 생략

④9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0 부터 ⑧6 까지 생략

부칙 <2023. 12. 29. 조례 제35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편집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편집위원에 대하여 제7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1회 연임할 수 있게 한다.